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310963(본소), 2018나310970(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310963(본소), 2018나310970(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990(본소)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길, 박진호

피고(반소원고)항, 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종규

변론 종결 2018. 12. 13

판결선 고 2019. 1. 24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6. 19. 선고 2017가단990(본소),
2017가단11198(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들과 제1심 공동피고 I, J, K, L, M은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북 울진군 N 임야 1,097㎡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노' 부분지상 목조 기와지붕 정자 49㎡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들에게,주위적으로, 경북 울진군 N 임야 1,097㎡ 중 14분의10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11. 7. 접수 제10775호로 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위 임야에 관하여2008. 6. 31.자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목조 건물 소유,범위: 별지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부분 147㎡"로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1내지 2행 "강제집행을"을 "강제집행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를 " 대구지방법원 2016나4998호로 항소하였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내지 3행 "S으로"를 "S으로부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채정선판사 송귀연판사 임세준

별지